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 심사 보고서

2014. 2. 28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인 : 한진숙(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-6 소행주 5층 503호)
외 724명

나. 소개의원 : 오진아 의원

다. 접수일자 : 2014. 2. 14.

라. 회부일자 : 2014. 2. 19.

마. 상정일자 :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(2014.2.28.)
상정, 심사, 채택

2. 청원요지

0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생 328만명 중 97만여명이 방과 후에 “나홀로 아동”인 실정이며, 마포구내에서도 매일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아동비율이 41%에 달하고, 학교 방과 후 교실을 제외한 지역사회 아동 돌봄은 전체 서비스 필요 아동 중 5.8%에 불과함

0 방과 후 아동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』를 제정하여 학부모들의 방과 후 돌봄 고민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

3. 청원 소개의원 요지(소개의원 : 오진아 의원)

0 마포구에서 지역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마포구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, 각 방과 후 돌봄기관들의 상호연계를 위한 방과 후 돌봄위원회 구성 및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설치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니 이같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망함.

4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청원은 2014년 2월 14일 청원인 한진숙 외 724명이 서명하여 오진아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고, 2014년 2월 19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0 청원취지는 마포구가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책임성있게 마포구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절대적으로 부족한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며, 현재 있는 방과 후 돌봄 기관들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낼 수 있도록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”를 제정하여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방과 후 돌봄 고민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임.

0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, 방과 후 돌봄 사업은 교육부, 안전행정부,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협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, 주관부처는 교육부이며, 현재 우리구의 방과 후 돌봄사업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음. 방과 후 돌봄은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재

능을 계발하고, 소외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며,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.

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,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(방과 후 -17:00)을 실시하고,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·저소득층·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는 저녁 돌봄(17:00-22:00)을 제공할 방침임.

돌봄 희망 학생들은 학교내 돌봄교실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, 야간공부방 등 지역별로 구축된 돌봄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, 2014년 1월 기준, 마포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등의 시설에서 총 1,74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, 초등학생의 경우 1,604명으로 이중 61.6%에 해당하는 988명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음.

교육부에서는 2014년 3월부터 초등 1-2학년 중심으로 무료 돌봄정책을 전격 시행하고, 2015년에는 1-4학년, 2016년에는 1-6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는바, 향후 예산지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 간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시행과정에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.

집행기관에서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청원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,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안심하고 아동을 양육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: 의견서 따로붙임

[불 임]

의 견 서

- 청 원 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
- 처리해야 할 기관 : 마포구
 -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
- 처리결과 :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
- 채택의견
 - 본 청원은 마포구가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책임성있게 마포구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절대적으로 부족한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며, 현재 있는 방과 후 돌봄 기관들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”를 제정하여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방과 후 돌봄 고민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,
 - 집행기관에서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청원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,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, 안심하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.